

2018년 제1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2018년 제1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개요

항 목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
위탁운용 금 액	○ 총 2,500억원 이내 (성장사다리펀드 57.7억원 포함)	○ 총 1,415억원 이내 (성장사다리펀드 32.7억원 포함)
제안방식	○ 모펀드 제안방식	○ 운용사 제안방식
선 정 운용사수	○ 3개사 이내 : 제안펀드별 500 ~ 1,000억원 범위에서 제안 * 총 2,500억원 초과제안 시 출자요청금액 및 선정순위에 따라 조정	○ 수시접수 및 선정(소진시까지)
출자대상 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및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	
운 용 사 신 청 자 격	○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	
운 용 사 선 정 방 법	○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성장금융 : www.kgrowth.or.kr	
접수일시	2018년 9월 21일(금) 09:00 ~ 16:00	수시 접수
심사결과 발 표	2018년 10월 26일	수시 선정
펀 드 결 성 시 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2. 투자대상

□ 주목적 투자대상

- 법인 형태의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구 분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블라인드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목적으로 약정총액의 30%이상 투자 ②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25%이상 투자
프로젝트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는 재기지원목적 등 구조조정 투자에 한함

주) 주목적 투자대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붙임자료(Page 5) 참조

- 투자기간 종료 시점에 민간 매칭금액*이 기업구조혁신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이하 “모펀드”) 출자금액을 상회하여야 함

* 매칭금액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성장금융이 정함

3. 주요 출자조건

항 목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												
최 소 결성금액	○ 최소 1,000 ~ 2,000억원 이상	○ 제안금액과 출자비율을 감안하여 결정												
모 펀 드 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총액의 50% 이내(사후적 매칭 선택 시 최대 98% 이내) ○ 순위별 모펀드 출자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출자(필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선순위</th> <th>중순위</th> <th>후순위</th> <th>순위의^{주)}</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출자비율</td> <td>39.2%</td> <td>6.9%</td> <td>7.7%</td> <td>46.2%</td> <td>100.0%</td> </tr> </tbody> </table> <p>주) 순위의 분배 시 선·중·후순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배받는 순위</p>		구 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순위의 ^{주)}	합계	출자비율	39.2%	6.9%	7.7%	46.2%	100.0%
구 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순위의 ^{주)}	합계									
출자비율	39.2%	6.9%	7.7%	46.2%	100.0%									
운 용 사 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총액의 2% 이상 ○ 운용사는 최소 모펀드와 동일한 순위와 비율로 출자 하여야 함 													
존속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 제안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												

항 목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	○ 제안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									
관리보수	<p>○ 블라인드 펀드 : 주목적 투자 여부 및 투자 잔액에 따라 차등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투자잔액</th> <th>미투자잔액</th> </tr> </thead> <tbody> <tr> <td>투자기간 이내</td> <td>주목적 투자 × 연1.7% 이내 비주목적 투자 × 연1.3% 이내</td> <td>연1.1% 이내</td> </tr> <tr> <td>투자기간 초과</td> <td>주목적 투자 × 연1.6% 이내 비주목적 투자 × 연1.2% 이내</td> <td>-</td> </tr> </tbody> </table> <p>○ 프로젝트 펀드 : 제안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p>		구 분	투자잔액	미투자잔액	투자기간 이내	주목적 투자 × 연1.7% 이내 비주목적 투자 × 연1.3% 이내	연1.1% 이내	투자기간 초과	주목적 투자 × 연1.6% 이내 비주목적 투자 × 연1.2% 이내	-
구 분	투자잔액	미투자잔액									
투자기간 이내	주목적 투자 × 연1.7% 이내 비주목적 투자 × 연1.3% 이내	연1.1% 이내									
투자기간 초과	주목적 투자 × 연1.6% 이내 비주목적 투자 × 연1.2% 이내	-									
성과보수	기본	○ 기준수익률(IRR 6%) 초과 시 초과이익의 20% 이내에서 지급									
	선택	○ Full Catch-up : 펀드 수익률이 IRR 8% 초과 시 펀드 수익의 20% 이내에서 지급 - 단, Full Catch-up 선택 시 상기 관리보수율보다 하향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 취지를 반영하여 운용사 별도 제안 가능									
추가 성과보수	<p>○ 기준수익률(IRR 6%) 초과 시 모펀드에 지급될 초과이익(6%를 초과하는 이익)을 재원으로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재지원목적 투자비용에 연동하는 추가 성과보수 지급 : 최대 +10% 이내</p> <p>* 선정 후 출자자 및 운용사 간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p>	○ 해당사항 없음									
성과공유	○ 운용사가 지급받은 추가 성과보수를 재원으로 투자기업과 운용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할 예정	○ 해당사항 없음									
이익배분 및 손실분담 구조	<p>○ 수익률별 이익배분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 이하 : 출자자 지분율에 따라 배분 - 기준수익률 초과 : 초과이익(GP 성과보수 차감전) 중 순위별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일정비율을 후순위 출자자(최소 6.5%이상) 및 중순위 출자자(최소 3.5%이상)에게 우선 배분하고, 잔여 초과이익을 순위별 출자자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로 제안 (순위의 출자자는 초과이익 중 순위의 비율만큼 수취후 배분) <p>○ 펀드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 → 중순위 출자자 → 선순위 출자자」 순으로 부담 (순위의 출자자는 손실금액 중 순위의 비율만큼 부담)</p>										

항 목	블라인드 펀드	프로젝트 펀드
납입방식	○ 수시납 또는 분할납	○ 제한없음
출 자 자 제 한	○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 단, 개인출자자(운용사의 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 및 기타 출자자가 책임 운용 강화 등 펀드운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성장 금융과 협의하여 결정	
수탁회사	○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 ○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 계 감 사 인	○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펀 드 전자보고 시 스템	○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핵 심 운 용 인 력	○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 자격 요건 -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하고, 투자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이 참여할 것 -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일 것 * 투자경력 :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입증가능 하여야함 ○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겸임을 제한	○ 핵심운용인력 총 1인 이상 참여 ○ 자격 요건 -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5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이 참여할 것 * 투자경력 :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입증가능 하여야함 ○ 핵심운용인력의 겸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안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
	○ 펀드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정관(또는 규약)에 기재	
기 타	○ 약정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구조조정사업 등 한국수출입은행법에 해당 되는 업무에 투자해야하며, 구체적 투자비율은 한국성장금융과 협의하여 결정 ※ 공고문 내 붙임자료(Page 6)를 참고 ○ 결성과정에서 보수구조 등 공고 조건에 대한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펀드 조성목적 및 주요 출자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성장금융과 개별협의를 통해 결정	

【붙임1】 주목적투자 관련 참고자료

■ 구조조정 대상기업 정의

구 분	대상기업 정의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1)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대상기업
	(2) 기업재무안정PEF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에 정의된 기업
	(3)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업
	(4) 기타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변제대상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80% 이상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포함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 ^{주)} 가 개시된 기업
	(3)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주) 기업구조조정촉진법(‘18.06.30 일몰)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를 의미하며, 향후 워크아웃 절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 등이 마련되는 경우 해당 법령 등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를 포함함

■ 재기지원 목적 투자 정의

구 분	투자의 유형
㉑DIP Financing	○ 대상기업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 자금대여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하는 사채 인수 포함
㉒ 회사 보유자산 매입	○ 대상기업의 자산매각,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입 - Sale and Lease Back, 대상기업에 우선매수권, Call Option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
㉓ 조기할인변제	○ 회생절차 개시 후 추가 변제 시 채권단 등의 합의하에 절차종결하고자 하는 기업에 투자
㉔ M&A	○ 대상기업이 인수 합병(M&A)을 통하여 정상화 시도하는 경우
㉕ NPL	○ 대상기업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㉑,㉒,㉓,㉔를 통해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추가 투자기회를 확보하는 경우

【붙임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부합하는 투자

■ 운용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약정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며, 구체적 투자비율은 한국성장금융과 추후 협의하여 결정함

- ① 한국수출입은행이 포함된 채권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의 인수 또는 동 기업 앞 유동성 공급 등의 투자
- ②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부합하는 투자

4.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 ※ 다만,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과거 5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선정 취소

- 펀드의 최소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재 사항

□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
 - 다만, 관련 법규 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 제한하며,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펀드 중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간 출자 제한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6. 기타 사항 등

□ 기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간 출자 제한함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공고일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7. 선정절차 및 일정 (블라인드 펀드)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심사(서류) → 현장실사 → 2차심사(구술) → 최종선정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안건에 한해 현장심사 및 심사 실시

□ 선정 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018.09.21.(금)	제안서 접수	접수시간 09:00~16:00
2018.10.26.(금)	최종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보

주)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서류) 평가기준 : 출자 설명회에서 안내 예정

8. 지원방법

□ 지원방법

-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일시 내 제출
 - ※ 「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관련 양식은 출자 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
- 2차심사(구술)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8부)를 제출
 - 분량 : 20페이지 이내 (발표 당일 PT자료, 파일 별도 지참)

□ 출자설명회

- 일 시* : 2018년 8월 29일 14:00 ~
* 단, 출자설명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장 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세미나실(2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9.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처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별관 4층)
- 문의방법 :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02-2090-9121)
E-mail : ts12.kim@kgrowth.or.kr

2018년 8월 27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 공고일, 접수일 등 일정은 내·외부사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